

문서번호	BSKS-3-1-14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1/5

1982.02.11.제정 1991.04.04.개정 1998.05.08.개정 2009.02.09.개정 2011.12.01.개정 2018.01.3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4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2.28.개정 2022.06.10.개정 2022.08.30.개정 2023.02.28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적용 및 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.) 제6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본교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**제3조(위원회의 조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 <개정 2022.06.10., 2023.02.28.>
 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경상대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의 이사, 본조 ③항에서 정한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8.01.31.. 2019.07.16. 2022.02.28.. 2022.08.30>
  -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. <항 신설 2019.07.16.>
    - 1.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"외부위원"이라 한다)을 최소 2 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6.10.>
    - 2.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. <호 신설 2019.07.16.>
    - 3.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호 신설 2019.07.16.>
    - 4. 특정 성(性)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 <호 신설 2022.06.10.>



문서번호	BSKS-3-1-14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2/5

- 제4조(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징계의결의 기한)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6조(제척사유)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제7조(위원의 기피 등)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)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 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0조(징계의결)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 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.
  -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 -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14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3/5

- 제10조의 2(정계양정기준) 교원 정계기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 2 및 교육 공무원 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(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 <조 신설 2020.09.24.>
- 제11조(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)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·근무성적·공적·개전의 정·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정계사유의 시효) ①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징계 사유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<항 신설 2022,06.10.>
  - ②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「사립학교법」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 <항 신설 2022.06.10.>
  -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, 징계의결,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<항 신설 2022.06.10.>
- 제13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 -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- 제14조(재심청구) ①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한 재심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  - ②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 후 절차적 하자, 징계양정의 과다, 징계처분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재심의 요청을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, 교원의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징계처분 재심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 단,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와 중복될 경우 하나만선택하여 재심의 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14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4/5

제15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6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, 대통령령, 교육부령 등에 따른다. <개정 2022.06.10.>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교육부 전문81413-236(1998.05.07.)호에 의거 1998년 5월 8일부터 "부산경상전문 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"학장"을 "총장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14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3.02.28.
페이지 수	5/5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